

## 안양시 동장 일일순찰 운영 지침

제정 2004. 4. 22 예규 제40호  
일부개정 2020. 1. 31 예규 제66호(안양시 예규 중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지침, 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각종 불법·무질서 행위의 신속한 처리, 지역여론 및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동장일일순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각 동장으로 한다.

제3조(순찰대상) 동장의 일일순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로 및 공공 시설물의 파손 및 이용 불편사항
2. 각종 공공공사 및 건축행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
3. 불법 주·정차, 노상적치물, 노점상 영업, 불법건축, 가로수 불법훼손 행위
4. 담배꽂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, 공장 오·폐수 무단배출, G·B내 불법 행위 등 각종 불법·무질서 행위
5. 불법광고물(간판, 포스터, 벽보,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주간판 등)
6. 각종 사건·사고
7. 주민 집단 민원 사항
8. 전반적인 지역여론(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및 주민 관심사항 등)
9. 기타 수범사항 등

제4조(순찰방법) ① 동장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일 2회 이상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여야 한다.

② 순찰은 도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순찰결과의 처리) ① 동장은 순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1. 동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, 시 또는 구, 타 기관 등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2. 집단행동 및 사건·사고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전화 또는 구두로 초동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안양시 동장 일일순찰 운영 지침

3. 일반적인 지역여론 및 예상동향 등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지역상황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4.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시정 수행에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휘보고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한다.
5.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고는 구와 시에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순찰결과에 대한 동향보고 사항이 조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순찰일지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순찰일지작성) 동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순찰일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이 지침에 의한 각 동장의 일일순찰 여부를 정례적으로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·감독 결과 일일순찰을 소홀히 한 동장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1. 31 예규 제66호, 안양시 예규 중 제명 띄어쓰기  
일괄정비 지침>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